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
------	-----

2022. 9.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9.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가.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및 부서 간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19. 3월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상 해당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개정된 직제순서 반영

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관련 인용조항 수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 제82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과 부서 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 관계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됨.

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분류(안 별표)

- 개정안은 민선 8기 시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2022.8.8.) 사항을 반영해 주관부서의 명칭과 직제순서,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변경함.

(1) 주관부서 명칭 및 직제순서 변경

- 조직개편을 통해 ‘푸른도시국’이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행정국’, ‘도시계획국’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직제 순서에 맞춰 변경함.

(2) 실·국 간 위임사무 변경

-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와 도로관리,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사료 제조업에 관한 사무의 실·국 간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실·국 간 위임사무 변경 >

주 관 부 서				사 무 명
현 행		변 경		
실·본부·국	부서	실·본부·국	부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고속도로 및 시청앞 광장 제외)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실·국·본부 내 위임사무 변경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와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사무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에서 아동담당관으로 이관되는 등 실·국·본부 내 위임사무 변경사항을 다음의 <표> 와 같이 반영함.

< 부서 간 위임사무 변경 >

주 관 부 서			사 무 명
실·본부·국	현 행	변 경	
	부 서	부 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2.1.1.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차량공해저감과	대기정책과	1.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스마트건강과	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 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주택정책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정비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치수안전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주 관 부 서			사 무 명
실·본부·국	현 행	변 경	
	부 서	부 서	
	하천관리과	치수안전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형 명칭 첨기)

(4) 수임기관 명칭 변경

- 조직개편을 통해 공원녹지사업소가 공원여가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수임기간 명칭 변경 >

실·본부·국	부 서	사 무 명	수임기관	
			현 행	변 경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3. 관할 구역내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한강사업본부장, 관할공원녹지사업소장	한강사업본부장, 관할공원여가센터소장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청장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 구청장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인용조항 변경(안 별표)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근거 법률인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2019.3.28.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제28조 → 제82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인용 조문 변경 >

주관부서	현행		변경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8조의 승강기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5항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82조의 승강기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좌동

-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의 변경은 해당사무의 변동이 없어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법률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후속 입법 조치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라. 종합의견

-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조정과 부서 간 기능조정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함.
- 다만,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의 위임사무 중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사료관리법」의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의 위임사무 중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사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소관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사무에 대한 인용조항을 제8조제6항으로 수정함 (안 별표 □ 푸른도시여가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8
----------	--------

제안년월일 : 2022년 9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의 위임사무 중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사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소관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사무에 대한 인용조항을 제8조제6항으로 수정함 (안 별표 □ 푸른도시여가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의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의 사목의 근거법령란 중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을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 <u>시민건강국</u>				□ <u>푸른도시여가국</u>				□ <u>푸른도시여가국</u>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바. (생략)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마. ~ 차. (생략)	○ 「축산법」 제12조 ○ (생략) ○ 「사료관리법」 제8조 제4항 ○ (생략)	구청장 구청장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마. ~ 차. (현행과 같음)	○ 「축산법」 제12조 ○ (현행과 같음) ○ 「사료관리법」 제8조 제4항 ○ (현행과 같음)	구청장 구청장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마. ~ 차. (현행과 같음)	○ 「축산법」 제12조 ○ (개정안과 같음) ○ 「사료관리법」 제8조 제6항 ○ (개정안과 같음)	구청장 구청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의 □ 여성가족정책실 표 주관부서란 중 “가족담당관”을 “아동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표 중 사회적경제담당관란을 삭제하고, 공정경제담당관의 제5호란 아래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가. 설립신고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확인증 발급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11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	구청장
--	--	--	-----

별표의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표 중 공정경제담당관란 다음에 농수산유통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	------------------	-------------------	-----

별표의 □ 기획조정실 표 주관부서란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

로 한다.

별표의 □ 경제정책실 표 중 도시농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중 물류정책과란을 주차계획과란 다음으로 이동하고 보행정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문화본부 표를 □ 기후환경본부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대기정책과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의 제2호란부터 제4호란까지를 각각 제1호란부터 제3호란까지로 하며, 차량공해저감과란을 삭제하고, 대기정책과란의 제3호란(중전의 제4호란) 다음에 제4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대기환경보전법」제61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제70조의2</p> <p>○「대기환경보전법」제94조</p> <p>○「소음·진동관리법」제36조</p> <p>○「소음·진동관리법」제38조</p>	<p>구청장</p> <p>구청장</p>
--	--	---	-----------------------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중 생활환경과 제3호의 수입기관란 중 “관할 공원 녹지사업소장”을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과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	---	---	-----

별표의 □ 행정국 표를 □ 시민건강국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 관광체육국 표를 □ 문화본부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 시민건강국 표를 □ 관광체육국 표 다음으로 이동하고, □ 시민건강국표 주관부서란 중 “건강증진과”를 “스마트건강과”로 하며, 동물보호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안전총괄실 표 중 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란 다음에 도로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정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제72조 ○「도로법」 제117조	구청장
-------	--	---	-----

별표의 □ 도시계획국 표를 □ 주택정책실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 주택정책실 표 중 주택정책과의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건축기획과란을 공동주택지원과란 다음으로 이동하며, 건축기획과란의 사무명란 제1호나목 중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를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로 하고, 전략사업과란을 삭제한다.

	2.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주택법」제15조, 제16조	구청장
	3.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주택법」제43조, 제44조	구청장

별표의 □ 균형발전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정비과”로 한다.

별표의 □ 푸른도시국 표 제목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하고, 조경과 제2호의 수임기관란 중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으로, 같은 과 제5호의 수임기관란 중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을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각각 하며, 자연생태과란 다음에 동물보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사목의 근거법령란 중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을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야.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 「축산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사료관리법」 제25조 ○ 「사료관리법」 제6조 및 제6조 ○ 「사료관리법」 제27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 「사료관리법」 제24조 ○ 「사료관리법」 제30조	구청장 구청장
-------	---	---	------------

별표의 □ 물순환안전국 표 중 물순환정책과란을 삭제하고, 주관부서란 중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하고, 치수안전과(종전의 하천관리과)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물재생계획과란을 치수안전과란 다음으로, 물재생시설과란을 물재생계획과란 다음으로 각각 이동한다.

	4.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물환경보전법」 제23조	구청장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개정 2022. 3. 10.></p> <p style="text-align: center;">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정책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주관부서</th> <th style="width: 45%;">사 무 명</th> <th style="width: 20%;">근거법령</th> <th style="width: 20%;">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가족담당관</td> <td colspan="3">1. ~ 2. (생략)</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노동·공정·상생정책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주관부서</th> <th style="width: 45%;">사 무 명</th> <th style="width: 20%;">근거법령</th> <th style="width: 20%;">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공정경제담당관</td> <td colspan="3">1. ~ 5. (생략)</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족담당관	1. ~ 2. (생략)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 5. (생략)			<p>[별표] <개정 2022. 3. 10.></p> <p style="text-align: center;">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정책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주관부서</th> <th style="width: 45%;">사 무 명</th> <th style="width: 20%;">근거법령</th> <th style="width: 20%;">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아동담당관</td> <td colspan="3">1. ~ 2.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노동·공정·상생정책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주관부서</th> <th style="width: 45%;">사 무 명</th> <th style="width: 20%;">근거법령</th> <th style="width: 20%;">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공정경제담당관</td> <td colspan="3">1. ~ 5.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주관부서</th> <th style="width: 30%;">사 무 명</th> <th style="width: 15%;">근거법령</th> <th style="width: 5%;">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td> <td>6. <u>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u></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u>구청장</u></td> </tr> <tr> <td></td> <td>가. 설립신고</td> <td>○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td> <td></td> </tr> <tr> <td></td> <td>나. 정관변경 신고</td> <td>○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td> <td></td> </tr> <tr> <td></td> <td>다. 합병 및 분할 신고</td> <td>○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td> <td></td> </tr> </tbody> </table>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동담당관	1. ~ 2. (현행과 같음)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 5. (현행과 같음)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u>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u>		<u>구청장</u>		가. 설립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나. 정관변경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족담당관	1. ~ 2. (생략)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 5. (생략)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동담당관	1. ~ 2. (현행과 같음)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 5. (현행과 같음)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u>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u>		<u>구청장</u>																																																		
	가. 설립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나. 정관변경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현행				개정안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라. 해산신고</u> <u>마. 과태료 부과징수</u> <u>바. 신고확인증 발급</u>	<u>○ 「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u> <u>○ 「협동조합 기본법」제119조</u> <u>○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u>	
사회적경제담당관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u>가. 설립신고</u> <u>나. 정관변경 신고</u> <u>다. 합병 및 분할 신고</u> <u>라. 해산신고</u> <u>마. 과태료 부과징수</u> <u>바. 신고확인증 발급</u>	<u>○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u> <u>○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u> <u>○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u> <u>○ 「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u> <u>○ 「협동조합 기본법」제119조</u> <u>○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u>	구청장	< 삭제 >			
< 신설 >							

현 행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조직담당관	1. (생략)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시농업과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물류정책과	1. ~ 4. (생략)		
주차계획과	1. (생략)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시정연구담당관	1. (현행과 같음)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삭제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물류정책과	1. ~ 4. (현행과 같음) (→ 주차계획과 다음으로 이동)		
주차계획과	1. (현행과 같음)		

현 행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행정책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 청앞 광장 제외)		구청장
	가.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7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117조	

문화본부

- 생 략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생 략)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삭 제 >			

문화본부 (→ 기후환경본부 다음으로 이동)

- 현행과 같음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기후환경정 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대기정책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 삭제 >			
대기정책과	2. ~ 4. (생략)			대기정책과	1. ~ 3. (현행 제2호~제4호와 같음)		
< 신설 >							
					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구청장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구청장

현행				개정안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u>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u></p>	<p>○「소음·진동관리법」제38조</p>	
차량공해저감과	<p>1. <u>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u></p> <p>가. <u>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u></p> <p>나. <u>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u></p> <p>다. <u>과태료의 부과·징수</u></p> <p>2. <u>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u></p> <p>가. <u>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u></p> <p>나. <u>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u></p>	<p>○「대기환경보전법」제61조</p> <p>○「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제70조의2</p> <p>○「대기환경보전법」제94조</p> <p>○「소음·진동관리법」제36조</p> <p>○「소음·진동관리법」제38조</p>	<p>구청장</p> <p>구청장</p>	< 삭제 >			
생활환경과	1. ~ 2. (생략)			생활환경과	1. ~2. (현행과 같음)		

현 행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 본부장,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

< 신 설 >

- 행정국
- 생략 -
- 관광체육국
- 생략 -
- 시민건강국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 본부장, 관할 공원여가센터 소장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 행정국 (→ 시민건강국 다음으로 이동)
- 현행과 같음 -
- 관광체육국 (→ 문화본부 다음으로 이동)
- 현행과 같음 -
- 시민건강국 (→ 관광체육국 다음으로 이동)

현 행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강증진과	1. (생략)			스마트건강과	1. (현행과 같음)		
동물보호과	1. <u>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u> 2. <u>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u>가. 등 록</u> <u>나. 시설변경</u> <u>다. 등록증 재발급</u> <u>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u> <u>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u> <u>바. 업무감독</u> <u>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u> <u>아. 승계신고</u> <u>자. 폐기 등의 조치</u> <u>차. 청문</u>	○ 「축산법」 제12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료관리법」 제25조 ○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 ○ 「사료관리법」 제27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 「사료관리법」 제24조 ○ 「사료관리법」 제30조	구청장 구청장	< 삭 제 >			

현 행

안전총괄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3. (생략)		
< 신 설 >			

도시계획국

- 생략 -

주택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생략)		

개 정 안

안전총괄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 3. (현행과 같음)		
<u>도로관리과</u>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 청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제72조 ○「도로법」 제117조 	<u>구청장</u>

도시계획국 (→ 주택정책실 다음으로 이동)

- 현행과 같음 -

주택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u>주택정책과</u>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신 설 >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검 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5항	
	2. (생략)		
공공주택과	1. (생략)		
전략사업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구청장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청장
공동주택지원과	1. ~ 2. (생략)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구청장
	3.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 공동주택지원과 다음으로 이동)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검 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5항	
	2. (현행과 같음)		
공공주택과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공동주택지원과	1. ~2. (현행과 같음)		

현 행

균형발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u>도시 활성화과</u>	1. (생략)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생략)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도로법」제31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 ~ 4. (생략)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원녹지법 제12조	관할 공원녹지 사업소장 구청장
	6. (생략)		

개 정 안

균형발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u>도시정비과</u>	1. (현행과 같음)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u>조경과</u>	1. (현행과 같음)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도로법」제31조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3. ~4. (현행과 같음)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원녹지법 제12조	관할 공원여가센 터소장 구청장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1. ~ 3. (생략)		
<p>< 신 설 ></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1. ~ 3. (현행과 같음)		
동물보호과	1. <u>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u>	○ 「축산법」 제12조	구청장
	2. <u>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구청장
	가. <u>등 록</u>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나. <u>시설변경</u>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다. <u>등록증 재발급</u>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라. <u>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u>	○ 「사료관리법」 제25조	
	마. <u>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u>	○ 「사료관리법」 제6조 및 제6조	
	바. <u>업무감독</u>	○ 「사료관리법」 제27조	
	사. <u>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u>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야. <u>승계신고</u>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재생계획과	1. (생략)		
물순환정책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 7. (생략)		
하천관리과	1. ~ 3. (생략)		
< 신 설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폐기 등의 조치	○ 「사료관리법」 제24조	
	차. 청문	○ 「사료관리법」 제30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재생계획과	1. (현행과 같음) (→ 치수안전과 다음으로 이동)		
< 삭 제 >			
물재생시설과	1. ~ 7. (현행과 같음) (→ 물재생계획과 다음으로 이동)		
치수안전과	1. ~ 3. (현행과 같음)		
	4.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구청장